■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 | |
|---|---|---|---|---|
| 응시번호 | | 응시자격구분 | | 사진<br>(가로 3.5㎝ × 세로 4.5㎝)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시험면제 | 20 년도 제 회( 월 일 시행)제1차 시험합격 | | | |
| 면제과목 | 제1차시험 | | | 확인자 (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를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수수료 |
|---|
| 1차 1만8천원/2차 3만3천원 |

**소방청장** 귀하

(자르는 선)

# 응시표

| | | | | |
|---|---|---|---|---|
| 응시번호 | | 응시자격구분 | | 사진<br>(가로 3.5㎝ × 세로 4.5㎝)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면제과목 | 제1차시험 | | | |
| 시험일시 | 20 년 월 일부터 까지 | | 시험장소 | |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기재요령

• 앞면의 기재사항 중 응시번호 •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사항은 원서제출자가 기재합니다.

• 응시자격구분: 다음 표의 응시자격구분란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번호 | 응시자격구분 |
|---|---|
| 1 | 소방기술사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2 | 위험물기능장 |
| 3 | 소방설비기사 |
| 4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5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6 |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 면제과목: 다음 표의 면제과목 중 해당과목을 기재합니다.

| 구분 |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
|---|---|
| 1차 시험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br>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br>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 다목의 과목<br>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br>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자르는 선)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기도구(흑 • 청 • 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응시원서 접수기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 |
|---|---|
| 합 격 예 정 자 발 표 예 정 일 | |
| 응시자격의 증명서류 제출기간 | |